

■ 최신 판례 ■

[도산] 채권조사기간의 말일 이전에 한 소송수계신청의 적법 여부

배성진 변호사 | 배기완 변호사

1. 사실관계

甲회사는 2009년 6월 17일 乙회사를 상대로 구상금 청구소송을 제기했고, 2009년 7월 23일 10시에 피고였던 乙회사에 대하여 회생절차 개시결정이 내려짐. 甲회사는 회생채권 신고기간 내인 2009년 9월 4일 회생법원에 위 구상금 청구소송으로 구하는 채권을 회생채권으로 신고함. 乙회사의 관리인은 채권조사기간 내에 위 회생채권에 대해 이의를 했음.

채권조사기간의 말일은 2009년 10월 16일이었는데, 乙회사의 관리인이 2009년 8월 26일에 소송수계신청을 했을 뿐 위 채권조사기간의 말일부터 1개월 이내에 누구도 수계신청을 한 사실이 없음.

2. 쟁점

채권조사기간의 말일 이전에 한 소송수계신청이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172조에 따른 소송수계신청에 해당하는지

3. 판시사항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이하 '채무자회생법') 제172조의 소송절차 수계는 회생채권 확정일환으로 진행되는 것으로서 조사기간의 말일까지 이루어지는 관리인 등의 회생채권에 대한 이의를 기다려, 회생채권자가 그 권리의 확정을 위하여 이의자 전원을 그 소송의 상

대방으로 하여 신청하여야 하고, 소송수계에서 상대방이 되는 관리인은 그 회생채권에 대한 이의자로서의 지위에서 당사자가 되는 것이므로, 당사자는 이의채권이 되지 아니한 상태에서 미리 소송수계신청을 할 수는 없다고 할 것이어서, 조사기간의 말일 이전에 소송수계신청을 하더라도 이는 부적법하다.

4. 해설

본건에서는 채권조사기간의 말일 이전에 한 소송수계신청이 채무자회생법 제172조에서 정한 소송수계신청에 해당하는지가 쟁점이 되었습니다.

대법원은 甲회사가 회생채권을 신고하고, 乙회사의 관리인에 의한 채권조사기간 내의 적법한 이의가 있었으므로, 그 조사기간 말일부터 1개월 이내에 소송절차를 수계해야 하는데, 회생채권자인 甲회사나 이의자인 乙회사의 관리인이 위 기간 내에 수계신청을 한 사실이 없기 때문에, 이 사건 소가 부적법하다고 판시했습니다.

또한 대법원은 乙회사의 관리인이 채권조사기간이 경과하기 전에 아직 회생채권 신고도 하지 않은 甲회사를 상대로 수계신청을 하고, 수계신청 이후에 乙회사의 관리인이 甲회사의 회생채권 신고에 대해 적법한 이의를 하여 이의자가 되었다고 하더라도, 기존의 수계신청을 적법한 수계신청으로 볼 수 없다고 판시했습니다.

본 대법원 판결은 채무자회생법 제172조에 따른 소송수계신청은 '채권조사기간의 말일'부터 1개월 이내에 제기해야 하고, 위 기간 요건을 준수하지 못한 소송수계신청은 부적법하다는 것을 확인시켜 준 판결이라고 하겠습니다.

5. 다운로드 : [대법원 2013. 5. 24. 선고 2012다31789 판결](#)